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사랑위원회와 기업사랑실무위원회 일원화 및 기능 정비

-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 기업사랑실무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중건의 제8조~제8조의3 삭제)

나. 중견기업법 제정에 따른 최고기업인 선정분야 변경(안 제10조)

(당초) 시장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명

(변경) 시장인원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1명, 중소기업에서 1명

다. 기업사랑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당초)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변경) 부위원장 : 부시장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등의”를 “등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제10조의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수상대상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예우대상 기업 등의 선정 및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미시최고기업인상”을 “구미시최고기업인상(이하 “최고기업인상”이라 한다)”으로, “구미시최고근로자상”을 “구미시최고근로자상(이하 “최고근로자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최고기업인상 시상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을 “최고기업인상 시상인원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1명, 중소기업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최고기업인상”을 “최고기업인상”으로, “년”을 “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여하는”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여하는”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수여할”을 “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기간은 제12조 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을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제12조제2항의 인증서를 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있으며, 애로를 파악하여”를 “있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기업 등에 대한”으로, “취할”을 “취하도록 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기업사랑 실무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실

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를 “2년의 범위”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관련있는 유관기관단체”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4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0조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중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우수중소기업”이라 함은 <u>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u> 우수중소기업 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제16조에 따라</u> ----- ----- -----.
제3조(육성 및 지원) ①·② (생 략) ③시장은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인 단체 육성 <u>등의</u>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육성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등에</u> ----- ----- -----.
제5조(기업사랑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u>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제5조(기업사랑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u>

③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생략)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⑤ (생략)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③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관계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담당-----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
-----.

③-----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각 호-----

심의한다.

<신 설>

1. (생 략)

<신 설>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신 설>

3. (생 략)

4.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한 사항

<신 설>

제8조(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원회
설치) ①위원회에서 심의·협의
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위
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공적심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현행 제1호와 같음)

5.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예우대상 기업 등의 선정 및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수상대상자 등
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
의한 사항

<삭 제>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관계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이 된다.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8조의3(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삭 제>

1.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예우대상 기업 등의 선정 및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우수 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수상대상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업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최고기업인상 등 시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하여 구미시최고기업인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구미

제9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①-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최고기업인상 등 시상) ①

----- 구미시최고기
업인상(이하 “최고기업인상”이라 한다)-----

----- 구미

시최고근로자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고기업인상 시상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명으로 하며, 최고근로자상은 남, 여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공적이 미미할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최고기업인상과 최고근로자상 시상은 년 1회로 하며, 시상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예우대상) ①시장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2. (생략)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 받은 기업 및 근로자

시최고근로자상(이하 “최고근로자상”이라 한다)-----

---.

②최고기업인상 시상인원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1명, 중소기업에서 -----

-----.

----- 않을 -----.

③최고기업인상-----

----- 연 -----

-----.

제12조(예우대상) ① -----

----- 각 호-----

-----.

--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

-----.

1. -----

----- 주는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따라 -----

4. 경제관련 단체에서 <u>수여하는</u> 기업관련 표창중 장관 및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이상 표창 을 받은 기업	4. ----- <u>주는</u> -----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예우대 상 기업 등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u>수여할</u> 수 있다.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u> ----- ----- ----- <u>줄</u> -----.
제13조(지원 및 예우종류) ①시장 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대상 기업 등에게 예산의 <u>범위</u> <u>안에서</u>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및 예우종류) ①----- ----- ----- <u>범위</u> <u>에서</u> 다음 각 호-----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채납처분 과 탈루혐의 및 부 과제척기간 도래시 제외)	7.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 -----
② <u>제1항 제1호</u> 및 제2호의 규정 적용은 중소기업에 한하며, 근 로자는 <u>제3호 내지 제5호</u> 의 규 정을 적용한다.	② <u>제1항제1호</u> ----- ----- ----- <u>제3호부터 제5호까지</u> --- -----.
③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예우기 간은 제12조 제2항의 인증서를 <u>수여한</u> 날부터 3년으로 하며,	③ <u>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제1</u> <u>2조제2항의 인증서를 준 날부터</u> <u>3년간</u> -----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기간을 둘 수 있다.	----- -----.
제14조(홍보 및 관리) ① (생 략) ②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u>있으</u> <u>며, 애로를 파악하여</u> 적절한 조 치를 <u>취할</u>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있으</u> <u>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u> <u>동향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u> <u>기업 등에 대한</u> --- <u>취하도록</u> <u>할</u> -----.
제15조(적용배제) ①시장은 예우 대상 기업 등이 다음 <u>각호</u>의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3조</u> <u>의 규정에 의한</u>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u>제1항 규정에 의한</u> 예우 및 지원 중단은 <u>제8조의3의 규정에</u> <u>의한 「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u> <u>원회」의 심의를 거쳐</u> 결정한 다.	제15조(적용배제) ①----- ----- <u>각 호</u>----- ----- <u>제13조</u> <u>에 따른</u> ----- -----. 1. ~ 4. (현행과 같음) ②<u>제1항에 따른</u> ----- ----- <u>제7조에 따른 위원</u> <u>회</u>----- ----- --.
제16조(우수중소기업 지정·육성) ① (생 략) ②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u>제1항</u>	제16조(우수중소기업 지정·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항에</u>

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인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대학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벤처기업 육성) ①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육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따른 -----
----- 제13조에 따른 -----
-----.

③제1항에 따른 -----

-----.
----- 2년의 범위-----

-----.

제21조(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제23조(벤처기업 육성) 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
-----.

②----- 제1항에 따라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벤처 집적시설(벤처타운)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기업사랑지원반 운영)	제28조의2(기업사랑지원반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지원반은 전기, 통신, 가스 등 기업민원과 <u>관련있는 유관기관</u> <u>단체</u> 에서 추천한 책임있는 실무 자로 구성한다.	②----- ----- <u>관련 있는 기관 및</u> <u>단체</u> ----- -----.
③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한다.	③-----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u>그 밖에</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제29조(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기업체 운영자가 상담 요청하는 사항	5. <u>그 밖에</u> ----- -----
⑤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u>범</u> <u>위안</u> 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⑤----- <u>범</u> <u>위</u> -----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중소기업단체 육성)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인 상호부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단체 육성·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0조(중소기업단체 육성) ----- --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 ----- ----- ----- -----.
제3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다른 조례의 준용) ----- -----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 필요----- -----.

관계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 ⑨ 생략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

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김 대 운
	담 당	강 진 선
	담 당 자	유 장 길 (480-6122)